

#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플랫폼 허용 기준 및 인증 절차 안내서

2025. 4.





# 목 차

1. 공인전자문서중계자 플랫폼 허용 기준 및 근거
1. 공인전자문서중계자 플랫폼 적합성 판단 원칙3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 플랫폼 허용 기준 및 근거3
Ⅱ.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절차
1.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절차5
2. 인증 세부절차5
Ⅲ.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심사절차 및 평가방법
1. 심사절차6
2. 심사 및 평가방법6
(붙임1)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 제반서류7
(붙임2)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양식8
(출급2) 중한선사군시중세사 한중선장시 중국 ···································
(붙임3) 공인전자문서중계자 기술심사 평가내용9
(붙임4)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사업계획심사 평가내용15
(붙임5) 본인인증 기술 허용 범위 ·······16
(붙임6)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신청서 양식17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플랫폼 허용 기준 및 근거

####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플랫폼 적합성 판단 원칙

- ▶ 【신뢰성】전자문서 송신부터 수신까지 全 과정이 명확하게 규명 되고 문서 전달 및 유통기록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함
- ▶ 【책임성】중계자는 자신이 인증받은 플랫폼의 신뢰성·안정성에 대한 문제 발생 시 피해복구·피해보상 등 직접 책임질 수 있어야 함
- ▶ 【이용자 보호】전자문서 수신과정에서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문서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플랫폼 허용 기준 및 근거

- o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 진입을 희망하는 사업자의 전자문서유통 플랫폼은 아래의 요건을 반드시 갖추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중계자 인증 심사 시 제출해야 함
  - ※ 제출서류 2종 : 전자문서유통 플랫폼 소개자료(별도 양식 없음), 플랫폼 필수 요건 **증적자료**(붙임3 참조)
  - ① 이용자가 전자문서를 송·수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또는 프로그램, 단말기 등)을 갖추어야 함
    - ※ 근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31조의 18, 동법 시행령 제15조의14, (고시)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 ② 전자문서가 송신자로부터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함
    - ※ 근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31조의 18, 동법 시행령 제15조의14, (고시)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 ③ 이용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은 타 중계자와 구별 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 근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



- ④ 이용자의 공인전자주소는 전자문서유통 플랫폼 내에서 1개의 공인 전자주소만 사용 가능해야 함
  - ※ 근거 : (고시)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⑤ 전자문서 송신, 수신, 열람 등에 대한 정의 및 시점(시각정보 등) 기준 수립과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근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31조의 18, 동법 시행령 제15조의14, (고시)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 ⑥ 이용자가 **송신, 수신, 열람한 전자문서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체계** (부인방지)를 갖추어야 함
  - ※ 근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31조의 18, 동법 시행령 제15조의14, (고시)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 ⑦ 수신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문서를 열람하기 전에 본인인증 과정을 수행하고 본인인증 수단\*에 대한 타당성을 갖추어야 함
  - \* 본인인증 기술 허용 범위(붙임5 참조)
  - ※ 전자문서에는 개인에게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열람시 본인인증 과정 필수
  - ※ 근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3, 동법 시행령 제15조의14
- ⑧ 제7항의 본인인증 수행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전자문서에 한하여 선택(생략 등)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갖추어야 함
  - \* 송신자(발송기관 등)와 중계자 간 서비스 계약 내용에 개인정보가 없는 문서목록 및 책임 등 조항을 추가하고,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신고 기능 제공 등 후속조치 체계 구비
  - ※ 근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3, 동법 시행령 제15조의14,
- ⑨ 공인전자주소 이용자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함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3, 동법 시행령 제15조의14



##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절차

###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절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31조의18 및 동법 시행령 15조의14, 15

### □ 인증 세부절차

순서	내역		<u>처리기관</u>	조치사항					
1	신청서 제출		<b>신청기관</b> →과기정통부	인증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붙임1 참조)					
2	신	!청서 접수	<u>과기정통부</u>	인증신청서 및 제반서류 접수					
2	심사진행 의뢰		<u>과기정통부</u> →KISA	신청기관 제출서류 KISA에 전달(공문발송)					
3	심사일정 통보		<u>KISA</u> →신청기관	기술심사 및 사업계획심사 일정 통보					
	심사	심사	서류검토	<u>과기정통부</u>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심 사	심 사	심 사	심 사	기술심사	<u>과기정통부</u> (KISA지원)	현장방문을 통한 '설비' 심사 (필요시 추가 기술심사 실시)
					사업계획 심사	<u>과기정통부</u> (KISA지원)	사업계획, 전자문서 법·제도 이해도, 서비스 운영능력 등 심사		
5	심사 결과보고		<u>KISA</u> →과기정통부	사업계획 및 기술심사 결과보고					
6	인증여부 결정		<u>과기정통부</u>	과기정통부 내부검토					
7	인증서 작성		<u>과기정통부</u>	인증서 작성(시행규칙 별지 제13호)					
8	중:	계자 인증서 발급	<b>과기정통부</b> →신청기관	종합 결과 확인 후 중계자 인증서 교부					

<sup>\*</sup>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사실여부 확인



##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심사절차 및 평가방법

### □ 심사 절차

o ① 기술심사 - 중계자 '설비' 등 인증요건 충족여부를 판단  $\rightarrow$  ② 1차 기술심사 미비사항 위주로 추가 심사  $\rightarrow$  ③ 사업계획심사

기술심사		추가 기술심사		사업계획심사
'설비' 관련 심사	<b>→</b>	기술심사 미비사항 중점 심사(필요시)	<b>→</b>	사업계획 심사 (최종심사)
현장실사		현장실사		대면발표

### □ 심사 및 평가방법

구분	심사내용	평가방법	평가내용	비고
1	기술심사 (1차)	현장실사	· 관련 전자문서법 및 고시에 따른 설비 및 기술능력 등 평가 ※ 붙임3 참조	전 항목이 '적합'에 해당되어야 하며, 부적합 항목이 있을시 보완 후 2차 기술심사 진행
2	추가 기술심사	현장실사	상동	1차 기술심사 시 부적합 항목에 대한 미비사항 보완 후 심사
3	사업계획 심사	대면발표	· 사업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4개 부문 14개 지표 평가 ※ 붙임4 참조	평균 80점 이상일 경우 '적합', 평균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합'



### 붙임1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 제반서류

### □ 인증신청 관련 제반서류

- ※ 인증신청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아래 제반서류 제출 필요
- ① 인증신청서(붙임2 참조)
-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로 한정
- ③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 내 포함내용]

- 서비스 소개, 서비스 강점,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 계획, 비즈니스 모델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 제시
-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술능력, 서비스 운영 계획, 장애발생시 대응방안 등 제시
- 설비 보유 리스트, 설비에 대한 관리·운용 계획서 포함
- 설비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 기술능력에 대한 요건 충족 내용 포함
- 사업계획심사 평가항목별(4개부문 14개 지표) 세부 내용 포함
- 이 외, 사업계획 및 중계자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 전부 기재
- ④ 공인전자문서중계 설비 및 기술능력 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시행령 제15조의1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등)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필요
  - ※ 설비에 대한 요건 충족 증명서류는 현장방문에 의한 기술심사 시에도 제시필요

### □ 인증 갱신 신청 관련 제반서류

- ※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아래 제반서류 제출 필요
- ① 인증 갱신신청서(붙임6 참조)
- ② 인증신청 시, 제출한 서류 일체
  - ※ 단,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 제출



## 붙임2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양식(시행규칙 별지 제12호)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인	인터넷홈페이지				
	제공업무의 종	류 및 내용			
	주요장비의 개	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1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4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붙임3 공인전자문서중계자 기술심사 평가내용

### ①공인전자문서중계자 기술심사 증적자료

- 1. 서비스 개요
- 2. 용어 및 시스템 정의
- 3. 전자문서 수신 정보처리시스템
  - 3.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정보처리시스템 정의
    - ※ 전자문서 수신당사자와 단말기 점유 당사자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정리 및 설명
    - ※ 전자문서가 발송된 후 이용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시스템(서버, 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정리 및 설명
- 4.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가입 및 탈퇴 절차
  - 4.1.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가입 세부 절차
    - 4.1.1.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가입 세부 절차(개인) 상세 프로세스 정보
    - 4.1.2.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가입 세부 절차별(개인) 화면 정보
    - 4.1.3.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가입 세부 절차(법인) 상세 프로세스 정보
    - 4.1.4.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가입 세부 절차별(법인) 화면 정보
  - 4.2.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탈퇴 세부 절차
    - 4.1.1.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탈퇴 세부 절차(개인) 상세 프로세스 정보
    - 4.1.2.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탈퇴 세부 절차별(개인) 화면 정보
    - 4.1.3.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탈퇴 세부 절차(법인) 상세 프로세스 정보
    - 4.1.4.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탈퇴 세부 절차별(법인) 화면 정보
- 5. 발송 전자문서의 수신 대상자(이용자) 매핑 방법
- 6. 이용자 본인인증 절차
  - 6.1.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본인인증 절차
    - 6.1.1.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본인인증 방식 설명
    - 6.1.2.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본인인증 상세 프로세스 정보
    - 6.1.3.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가입 시 상세 절차별 이용자 본인인증 화면 정보
  - 6.2. 전자문서 열람 시 이용자 본인인증 절차 및 세부 처리 방법
  - 6.2.1. 전자문서 열람 시 이용자 본인인증 방식 설명
    - 6.2.2. 전자문서 열람 시 이용자 본인인증 상세 프로세스 정보
    - 6.2.3. 전자문서 열람 시 상세 절차별 이용자 본인인증 화면 정보

#### 7. 전자문서 유통 절차

- 7.1. 전자문서 유통 절차(서비스 미가입자)
  - 7.1.1. 전자문서 유통 시 상세 프로세스(서비스 미가입자) 정보
  - 7.1.2. 전자문서 유통 시 상세 절차별(서비스 미가입자) 화면 정보
- 7.2. 전자문서 유통 절차(서비스 기가입자)
  - 7.2.1. 전자문서 유통 시 상세 프로세스(서비스 기가입자) 정보
  - 7.2.2. 전자문서 유통 시 상세 절차별(서비스 기가입자) 화면 정보
- 8. 유통증명서 발급 절차
  - 8.1. 유통증명서 발급 절차(개인)
    - 8.1.1. 유통증명서 발급 절차(개인) 상세 프로세스 정보
    - 8.1.2. 유통증명서 발급 절차별(개인) 화면 정보
  - 8.2. 유통증명서 발급 절차(법인)
    - 8.2.1. 유통증명서 발급 절차(법인) 상세 프로세스 정보
    - 8.2.2. 유통증명서 발급 절차별(법인) 화면 정보



# ②공인전자문서중계자 기술심사 평가표

번 호	항목번	호	심사내용	점검 결과
1		1-1-1.	전자문서유통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인프라(서버, 네트 워크 등) 운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위한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2		1-2-1.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공인전자주소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송수신 또는 중계 서비스를 제공 하는가?	
3		1-3-1.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해지 및 변경 절차 등을 갖추고 있는가?	
4		1-3-2.	공인전자주소 이용자에 대한 정보관리 기능을 갖추고 전담기관의 유 통관리시스템으로 해당 정보를 등록 또는 등록이 실패할 경우 재등록 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는가?	
5		1-4-1.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중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발생하는 유통정보 등을 생성 및 보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6		1-4-2.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담기관의 유통관리시스템으로 유통정보를 등록하거나 등록이 실패할 경우 유통정보를 재등록하기 위한 기능을 구현하였는가?	
7		1-4-3.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통정보와 전담기관의 유통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유통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는가?	
8	공인전자 문서중계자 업무수행	1-4-4.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송신자가 전담기관에서 관리하는 유통정보(송 신자 요청에 의하여 중계된 전자문서에 한 함)의 수치(수신과 열람에 한 함)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고 있는가?	
9	능력점검	1-4-5.	전자문서의 유통정보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의 해시값을 생성 시 SHA-256 해시함수를 사용하고 있는가?	
10		1-5-1.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이용자가 유통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가?	
11		1-5-2.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유통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는 경우 유통증명서의 생성·발급·검증 및 보관 등을 위한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가?	
12		1-6-1.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유통중계시스템은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용도로만 운영하고 있는가?	
13		1-6-2.	전자문서유통 업무 수행을 위한 ISP 회선 및 라우터 등은 이중화로 구성되어 하나의 통신 경로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전자문서유통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14		1-6-3.	전자문서유통 업무 수행을 위한 망회선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ISP로 구성되어 있는가?	
15		1-7-1.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미가입자에게 전자문서가 발송된 후 해당 전자 문서의 열람기간이 만료되면 이용자가 공인전자주소 서비스에 가입 및 열람을 시도할 때 해당 전자문서가 열람되지 않도록 제한 및 안내 하고 유통정보가 생성되지 않도록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가?	
16		1-7-2.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미가입자에게 전자문	



번	항목번	호 	<i>마마 2 마 <b>7</b>의 1</i> 심사내용	점검
ই	J , L		서의 수신 동의 여부 등 안내 시 서비스 미가입자가 전자문서를 수신 하였거나 공인전자주소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 등으로 오해의	결과
17		1-7-3.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는가? 이용자가 타인의 전자문서 또는 광고성 전자문서 등을 수신할 경우 이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가?	
18		1-7-4.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전자문서에 대한 수신 거부를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가?	
19		1-7-5.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에게 부여된 공인전자주소를 확인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20		1-7-6.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에게 부여된 공인전자주소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21		1-7-7.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는가?	
22		1-7-8.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이용자의 전자문서가 수신되어 보관되는 문서함 등에는 공인전자주소 기반으로 유통된 전자문서와 공인전자주소 기반으로 유통되지 않은 전자문서를 이용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는가?	
23		1-8-1.	유통중계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장비는 시스템 시간을 표준시간으로 동기화하고 있는가?	
24		1-9-1.	유통중계시스템 내 공인전자주소 등록자 본인 또는 법인을 포함한 사업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본인확인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	
25		1-9-2.	정보주체(이용자)의 전자문서 열람 등을 위한 본인인증 수행 시 허용된 기술범위 내에서 본인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26		1-10-1.	전자문서의 송신, 수신 및 열람 사실 등에 대한 무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부인방지를 위한 기능 등을 갖추고 있는가?	
27		1-10-2.	유통중계시스템이 전자문서를 중계(송신, 수신 및 열람 등)하며 생성되는 작업 수행 이력과 전자문서의 유통정보에 대한 위·변조 및 삭제 등을 방지 또는 이를 탐지할 수 있는 기능 등이 구현되어 있는가?	
28		1-10-3.	유통중계 설비의 모든 로그파일에 대한 저장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가?	
29		1-11-1.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중계자의 운영·기술적 관리부문에 대하여 정기 감사를 실시 후 전담기관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있는가?	
30		2-1-1.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보안시스템을 설치·운영 하고 있는가?	
31	정보보안	2-1-2.	운영하고 있는 보안시스템에 대한 운영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가?	
32	관리체계 점검	2-2-1.	유통중계시스템 등 서버의 사용목적과 관계없는 서비스를 제거하고 있는가?	
33		2-2-2.	유통중계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는가?	
34		2-2-3.	외부에서 원격으로 유통중계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	



번호	항목번호	1	실사내용	점검 결과
_ 오			(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고 있는가?	24
35		2-2-4.	접근통제 정책에 따라 인가된 사용자만이 유통중계시스템이 위치한 네트워크 영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IP 할당, MAC 주소 제한 등의 방법으로 통제하고 있는가?	
36		2-2-5.	유통 중계 설비(네트워크, 서버 등)에 접근이 허용된 사용자를 명확하게 식별 및 인증하고 설비 접근 시 안전한 접근수단을 적용하고 있는가?	
37		2-2-6.	유통중계시스템 등 중요 서버의 접속 연결시간 및 동일 사용자의 동시 접속을 제한하고 있는가?	
38		2-2-7.	데이터베이스 내 정보에 접근이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정보시스템(서버) 및 사용자를 명확히 식별하고 접근통제 정책에 따라 통제하고 있는가?	
39		2-3-1.	중계자 유통중계시스템 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고,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는가?	
40		2-4-1.	유통중계시스템 등 전자문서 유통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자산(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등)의 OS,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패치적용 및 그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가?	
41		2-4-2.	유통중계시스템 등 전자문서 유통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자산(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등)의 경우 공개 인터넷 접속을 통한 패치를 제한하고 있는가?	
42		2-5-1.	서비스, 사용자 그룹, 정보자산의 중요도,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유통 중계시스템 네트워크 영역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각 영 역간 접근통제를 적용하였는가?	
43		2-6-1.	전산실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IDC) 등 유통중계시스템 등이 위치하는 물리적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는가?	
44		2-6-2.	이동컴퓨팅기기(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및 보조저장매체 등을 보호구역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출입 통제와 보안사고 예방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45		2-6-3.	신규 정보시스템 도입, 유지보수 등으로 보호구역 내 작업이 필요한 경우 작업신청 및 수행 관련 절차를 수립하고 작업기록을 분기별 l회 이상 검토하고 있는가?	
46		2-6-4.	유통중계시스템 등에 대해 24시간 감시 가능한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47		2-7-1.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유통중계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메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48		2-7-2.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가?	
49		2-8-1.	개인정보취급자별로 개별 계정을 부여하고 있는가?	
50		2-9-1.	유통중계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51		2-9-2.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사용자 계정 등록·삭제(비활성화) 및 접근권한 등록·변경·삭제에 관한 공식적인 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는가?	
52		2-9-3.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유통중계시스템 등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 있는가?	



			8711 72 No. 3 224 Y	
번 호	항목번	ই	심사내용	점검 결과
53		2-9-4.	유통중계시스템에 적용된 접근권한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고 업무 내용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있는가?	
54		2-9-5.	유통중계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이용·삭제 및 접근권한의 부여·변경·삭제 이력을 남기고 월 1회 이상 검토하고 있는가?	
55		2-10-1.	유통중계시스템 운영을 위한 모든 장비의 백업 및 복구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있는가?	
56		2-11-1.	정보주체(이용자)가 중요 정보 접근 시 비밀번호 재확인 등 추가적인 인증의 적용방안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57		2-11-2.	개인정보취급자 및 관리자 등 사용자가 전자문서 유통중계시스템 접 근 시 강화된 인증방식 및 로그인 횟수 제한 등 접근통제방안을 수 립·이행하고 있는가?	
58		2-12-1.	전자문서 중계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 보호를 위하여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 암호 사용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59		2-12-2.	전자문서 중계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를 저장·전송· 전달 시 암호정책에 따라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는가?	
60		2-12-3.	암호키 생성, 이용, 보관, 변경, 배포, 복구, 파기를 위한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필요시 복구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61		2-13-1.	바이러스 · 웜 · 트로이목마 ·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로부터 유통중계시 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성코드 예방 · 탐지 · 대응 등 보호대책을 수립 · 이행하고 있는가?	
62		2-13-2.	유통중계시스템 및 전자문서 중계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PC 내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악성코드 예방, 탐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63		2-13-3.	악성코드 감염 발견 시 악성코드 확산 및 피해 최소화 등의 대응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64		2-14-1.	전자문서 유통중계시스템의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65		2-14-2.	침해사고 대응절차는 관련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는가?	
66		2-14-3.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분석 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체계에 반영하고 있는가?	
67		2-15-1.	유통중계시스템(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 절차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있는가?	
68		2-15-2.	유통중계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수행 후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였는가?	
69		2-16-1.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에 관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70		2-16-2.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모의훈련 후 그 결과를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있는가?	
71		2-17-1.	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번 호	항목번	호	심사내용	점검 결과
72		2-18-1.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이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 등 인증을 갖추었는가?	
73		3-1-1.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공인전자주소 가입 대상자에게 공인전자주소 생성 및 이용 등에 관한 약관 동의를 받고 있는가?	
74		3-2-1.	공인전자주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있는가?	
75	개인정보	3-2-2.	공인전자주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있는가?	
76	보호 관리체계 점검	3-2-3.	공인전자주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가?	
77		3-2-4.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있는가?	
78		3-3-1.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시점이 도달한 때에는 파기의 안전성 및 완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체없이 파기하고 있는가?	
79		3-4-1.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을 할 경우 법 의무사항을 문서화하고 있는가?	
80		3-5-1.	유통중계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가?	



# 붙임4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사업계획심사 평가내용

심사항목	번호	세부 심사항목
	1.1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의 핵심적인 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가?
1. 전자문서 제도 및 전자문서법에 관한	1.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들과 업무의 범위를 숙지하고 있는가?
이해도 평가(20점)	1.3	"(고시)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에 따른 중계자의 준수사항과 업무수행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가?
	2.1	전자문서 중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문적인 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는가?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	2.2	전자문서 중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가?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능력 평가(40점)	2.3	IT 인프라 구축이나 유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운영 경험 또는 그에 준하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이력·경험 등이 있는가?
	2.4	제시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전자문서 산업 환경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3.1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전자문서 수신 거부 혹은 회원 탈퇴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가?
	3.2	서비스 관련 문의, 민원제기 등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3. 이용자 보호 및 이용편의성 등을 위한 서비스 구현능력	3.3	전자문서 수신동의 절차와 수신동의 약관 내용 전문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하고 동의 받는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평가(30점)	3.4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수수료를 받을 경우 정책 및 관련 내용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는 등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3.5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환경이 다양한 운영체제(Android, iOS, IE, Chrome, Safari 등)를 지원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UI/UX)로 구현되어 있는가?
4. 서비스의 확장성	4.1	송신자·수신자 서비스 가입·제휴, 프로모션 등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나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가?
평가(10점) 	4.2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의 확장을 위한 다양한 비즈모델을 고려하고 있는가?



### 붙임5 본인인증 기술 허용 범위

#### < 전자문서중계 업무 내 본인인증 기술 허용 범위 >

본인인증		인증기술 설명 및 근거		
비밀번호 방식	설명	<ul> <li>두 종류 이상의 문자구성으로 8자리 이상 길이의 문자열</li> <li>※ 문자종류는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의 4가지임</li> <li>10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된 문자열</li> <li>※ 숫자로만 구성불가</li> </ul>		
	근거	<ul> <li>패스워드 선택 및 이용 안내서 內 이용자 비밀번호 작성규칙(과기정통부 가이드 시항)</li> <li>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內 제4조 8항</li> </ul>		
	설명	• 지문, 홍채, 안면 인식 등 사람의 신체정보와 행동적 특징을 활용		
생체기반(지문 등)	근거	• 금융보안원은 NIST(미국표준기술연구소) 가이드를 기준으로 생체인증에 대한 보안요구 사항 기준 제시		
휴대폰	설명	• SMS :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정보 입력 → 1회용 비밀번호 수신 • PASS App : 이름, 휴대폰번호, 캡차인증 후 PIN6자리 입력		
	근거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신용카드	설명	• 신용카드정보(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를 이용		
건둥//=	근거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고도이즈서	설명	• 공동인증기관이 발급한 공동인증서를 기반으로 전자서명		
공동인증서	근거	•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설명	•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인증서에서 제공하는 본인인증 수단인 PIN, 생체인증 등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하여 허용		
	근거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제6조(가입자 등록)		
스마트폰 앱 인증	설명	• 금융보안원 등 기관으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수행한 앱에 한하여 스마트 패턴, PIN 6자리 등 단독 허용 또는 2Factor 본인인증 절차 허용		
	근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3(이용자의 정보 보호)		

<sup>※</sup> 향후 관계 부처 및 법령에서 인정하는 인증방식이 추가될 경우 전자문서 중계업무에서의 인증 기술도 계속 추가 허용 예정



### 붙임6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신청서 양식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명칭		사업자등	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제공업무의 종	류 및 내용					
	주요장비의 개	요	설치장의	ት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5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